

EC 회원국의 여성농업인 정책

박민선 (농협중앙회 조사부 과장)

1. 머리말

EC회원국에서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각 국의 실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이 가진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유럽에서 여성농업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첫째, 가족이 경영하는 가족농장 일에 상당부분 참여하고 그에 따라 가구소득에 많이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동은 사회적으로 적절히 평가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활동으로 간주되지 못하고 적절한 지위(status)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독자적으로 사회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혼의 경우나 남편이 사망할 때 가족농장을 승계하는 데 불이익을 당하고 도시의 여성 임금고용자에 비해 임신 출산과 관련된 사회보장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보장의 혜택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들이 직업인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여 각종 직업훈련에 참여할 기회가 제약되어서 직업활동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최신의 기술을 습득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농민단체나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어 이러한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됨으로써 자신들을 대변할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궁극적으로는 젊은 여성의 도시취업과 이농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농업인의 결혼문제나 가족농의 소멸과 같은 농업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유럽에서의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 국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과 함께 EC차원에서의 남녀평등, 그리고 특별히 피고용노동에 참여하는 여성과는 달리 독특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의 지위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1970년대 이후 상당부분 진전되고 있다. EC는 1970년대 중반부터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는 대회를 2년마다 개최하였다. 그리고 1986년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한 남녀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훈령(directive)을 만들어서 각 회원국에게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이 훈령에는 사업창설과 확장에서 남녀의 평등한 대우, 부부 파트너 기업의 설립 규정, 자영업자의 배우자가 행하는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 임신이나 육아 기간 중 자영업여성의 보호 및 대행서비스 설립 촉진, 각 직능단체에서 여성보호를 위한 시책을 여성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포함하는 훈령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1987년 10월 23일 EC 위원회는 남녀평등의 원칙을 사회보장의 전 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배우자 유족급여, 가족수당, 부양가족수당, 퇴직금 등에도 남녀평등의 원칙을 적용할 것, 그리고 자영업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장려를 제안하였다.

또한 1986년~90년 기간 중 실시된 남녀평등법 2차 행동계획에서 EC 위원회는 법제, 교육, 직업훈련, 고용, 신기술, 사회보장, 가족에의 참가, 자영업을 포함한 전 직업에서 직업상의 책임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1988년부터 회원국에 대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공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유럽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도 완전한 남녀평등이 실현되거나 여성 급여소득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EC회원국 가운데 선진적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① 유럽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②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③ 농업과 가사노동에 대한 각 종 대행서비스 제도 ④ 농업단체 및 협동조합에의 여성농업인 참여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여성이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형태는 단독 및 공동경영주, 경영주인 가족원(주로 남편)을 돕는 형태, 그리고 경영주인 가족원으로부터 임료금을 지급받는 형태, 그리고 법인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형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경우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받는 대우는 차이를 보이게 된다.

가.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EC 회원국에서는 여성경영주와 남성경영주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여성농업인의 권리와 의무도 남성경영주와 동일하다. 그러나 여성경영주는 유럽에서도 많지 않으며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농업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농업경영주와 결혼하여 가족농업종사자로 일하는 여성농업인이다. 이들은 가족의 소득에 상당부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가가 보유한 자산의 상당부분은 이들의 노동을 바탕으로 취득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농업인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EC 회원국에서는 공동경영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와 가족농업보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EC회원국 가운데 공동경영주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독일에서는 부인이 남편과 농장을 공동 소유할 경우 공동경영인으로 인정하는데 이 때에는 부부명의로 농장을 토지등기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경영인인 여성은 권리와 의무를 남편과 균등하게 공유한다.

벨기에에서도 공동경영인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동경영의 경우는 소유 계약서 등의 증서류를 양 배우자 명의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동경영하는 각 배우자는 각기 수입과 지출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각 배우자가 본인 수입으로 구입한 영농자재를 본인 소유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각 배우자가 본인 수입으로 구입한 영농자재는 스스로 관리하며 본인전용 기계나 도구를 구입할 수 있다. 반면 부부가 공동으로 구입한 자재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도 농지임차법에 따라 양 배우자 명의로 차지계약을 체결하고 양 배우자가 농업에 취업하면 부부는 공동경영자로 간주된다.

덴마크에서도 부동산 권리증서에 부부 모두의 명의를 등록함으로써 공동경영주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부부는 공동소유자로서는 의사결정을 공유하고 재산, 수입, 부채를 균등하게 배분한다.

프랑스에서는 여성농업자를 포함한 여성 자영업자의 지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농업인은 다음의 3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① 임금수령자(salaried status) ② 동업자 (partnership status : 공동경영인) ③ 보조자 (assisting spouse 혹은 collaborateur spouse status)의 3가지로 지위를 구분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⁸⁾ 특히 1980년

농업법에서는 농장주의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공동책임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이 채택되었다. 이 농업법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농업경영에서 부부간의 평등성을 명시하기 위해서 "협동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동일 농업자산을 경영하는 부부는 경영의 필요와 관련된 자산관리행위에 대해 서로 위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한 쪽의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동의나 서명 없이도 농장의 경영에 관한 독자적인 행동을 용인하고 있다. 이는 부부의 농업경영행위에 대한 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부인이 남편과 함께 실질적인 공동경영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부인의 권리는 위에서 살펴본 독일이나 덴마크, 벨기에와는 달리 농지소유권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는 실질적으로 공동경영하는 가족농장에서 일하는 여성농업인을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경영인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동경영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으로서 차지계약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자가 계약의 종결 혹은 갱신에 대해 배우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부인을 공동 차지인으로 함으로써 남편이 사망할 때 임차권을 원활하게 부인에게 이양하도록 한 조치이다. 또한 신규취농시에 청년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정부보조금을 경영주의 부인에게도 별도로 지급한다.²⁾

공동경영인외에 배우자의 경영에 협력하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부인은 자산관리행위를 남편에게 위임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남편의 경영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부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농업인"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반드시 공동경영인이 아닌 경우에도 그들이 농업에 관여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준경영주"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1)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자영업자의 부인 가운데 3가지 지위 중 하나를 선택한 여성은 20%에 불과하다.

2) 본 제도는 ㉔ 21세이상 35세미만의 전업노동자 ㉕ 일정규모의 경영규모 ㉖ 일정 정도 이상의 직업적 자격과 능력요건을 갖출 것 등의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청년 농업인에게 「청년농업자 자립촉진지원금」이라는 보조금과 저리의 특별융자를 제공한다. 1988년 개정된 법에 따라 남편과 함께 가족농업에 종사하는 부인에게도 독자적인 자격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게 된다. 수여조건은 위의 ㉔㉕의조건을 만족시키고 농업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부인의 경영참가를 고려하여 지원금이 증액된다. 또한 남편과 부인이 각 각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법인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경영체가 성인 2명이상의 가족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규모일 것을 조건으로 남편과 부인에 대해 각 각의 자립지원금이 교부된다.

또한 1999년 개정된 농업법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더욱 개선하여 경영주의 부인이 공동경영자로서 연금수혜 등에서 남성경영자와 동등한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도록 개정되었다.

네덜란드에서도 공동경영주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유한책임 조직이나 가족원이 공동조직한 조직의 일원인 경우 여성농업인에게 공동경영인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공동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동경영주로서의 신분을 인정하는데 이 경우에는 경영주가 차지인인 경우 경영주의 사망시 여성의 주된 수입을 농장에서 혹은 농장의 일부에서 얻을 경우에 차지권을 계승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나. 가족농업 보조자

경영주와 결혼한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인 외에도 가족농업의 보조자로서 직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가족농업 보조자 그 자체를 사회적 지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경영주가 아닌 경우에도 "준경영인"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덴마크나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은 세제상의 혜택이나 재산공유 등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배우자를 돕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특별혜택을 부여한다. 즉 한편의 배우자가 소유한 농장에서 부부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서 유래한 수입은 농장에서 지배적 역할을 맡는 배우자의 소득으로서 과세한다. 그러나 부부가 희망하면 농장수익의 50%를 배우자에게 양도하여 양도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양도액의 최고한도액에 제한을 두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가족농업 보조자에 대하여 다음의 두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경영주는 부인이 가족농장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 세부담의 경감조치를 요구하거나 부인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간의 재산계약을 맺은 부부에게는 현재 및 장래의 전 재산을 공유하게 되며 이에 따라 재산과 부채의 전부를 공유한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도 남편이 경영하는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 재산의 1/2과 재산에서 파생하는 부가가치의 1/2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에는 농가부채의 1/2도 동시에 가지게 된다. 다만 부부가 재산을 나누어 소유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명시적으로 가족농업 보조자라는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가족농장에서의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들이라고 해석된다.

다. 임금수령자

배우자의 농장에서 일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역시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EC회원국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남편의 농장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임금노동자가 가지는 종속적 지위 때문에 부부간의 종속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가족농장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EC차원에서도 여성에게 이 가족농장에서 하는 노동을 평가절하하게 된다는 점과 임금노동자라는 종속적 지위 때문에 임금노동자의 지위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라. 법인경영체에서의 여성농업인

법인경영체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은 법인의 결성에 필요한 자산의 출자와 노동 성과의 배분과정에서 가족경영농장에 비해 보다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지위의 측면에서도 보다 진전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프랑스를 예로 들어 법인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프랑스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가능한 농업생산법인은 「공동경영농업집단(GAEC)」 혹은 「유한책임농업경영」(EARL)이다. 여성은 GAEC나 EARL에 참여할 수 있다. 두가지 형태의 법인 가운데 GAEC는 부부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지 않은 반면 EARL은 부부만으로 설립가능하다. GAEC는 노동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조합적 성격이 강한 법인으로 10인 이하의 구성원으로 조직되는데 구성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구성원 전원이 경영노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각 자가 독자적인 경영주라는 자격을 보유하는 특례적인 원칙이 인정된다. 그러나 부부만으로 GAEC를 설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적어도 제3자가 한사람이라도 참여하면 부부는 동일 GAEC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GAEC에 참여하는 여성은 경영주라는 신분을 가지게 된다.

EARL은 출자를 목적으로 성립한 법인으로 구성원은 동산, 부동산, 현금 중의 적어도 하나를 출자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이 모두 경영노동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조합원은 "경영에 종사하는 조합원"과 "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으로 구분된다. EARL은 1인 출자로도 가능하며 부부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부부가 법인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인이 출자를 해야하므로 부인의 재산-개인재산, 공동재산의 지분, 부인명의로 임차권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자산의 소유와 경영에 대해 부부가 각각의 권리를 일단 개인수준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법인조직으로 재구성한다는 점, 그리고 소유와 경영에 대한 대가가 부부 각 각에 대해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종래의 가족경영에서는 매우 애매한 위치에 있던 여성에게 독자적인 권리와 노동의 대가를 부여하는 형태로 전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장과 정책지원을 하는 것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진전된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EC국가들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취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서로 상이하므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역시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여성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를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따라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농업인이 경영주 혹은 공동경영주인 경우인데 EC국가들에서는 남성 경영주와 동등한 사회보험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가족농업 보조자로서의 여성농업인인 경우로 피보험자인 남편을 통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경우와 독자적인 피보험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

장혜택은 각 국별로 상이하다. 셋째, 임금노동자로서 농업에 참여하는 여성 농업인의 경우로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금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번째 경우는 법인형태의 농업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법인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사회보장의 혜택도 차이를 보이는데 임금노동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임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동경영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남성 농업경영주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EC국가들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쟁점은 여성 농업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농업 보조자로서의 여성 농업인에게 독자적인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지의 여부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각 국에서 이 범주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와 밀접히 관련된 문제이다.³⁾

EC 회원국들의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로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가 여기에 해당한다. 두번째는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제도를 가진 나라로 프랑스와 서독,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가 포함된다. 세번째로는 농업을 포함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를 가진 나라를 들 수 있는데 벨기에가 여기에 해당한다.

각 국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이처럼 서로 다른 사회보장체계 때문에 간략히 정리하기가 어렵지만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여성농업인도 기본적인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험 등의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까지는 가족농업보조자를 독자적인 피보험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가구단위의 연금은 점차로 개인

3) EC 수준에서는 여성농업인을 포함하여 가족이 경영하는 자영업에서 경영주가 아닌 여성, 즉 가족원을 돕는 여성에게 독자적으로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가족경영에 참여하는 여성들에게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단위의 연금제도로 변화해 갈 것이며 EC에서도 경영주를 돕는 여성농업인이 독자적으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게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이 독자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액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덴마크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한 여성농업 보조자는 60세부터 조기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농업연금강제보험제도를 택하고 있는 룩셈부르크에서는 남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은 법률상 피보험자 본인이 부양 가족의 농업보조자로 간주된다. 또한 경영주와 결혼한 18세 이상 여성농업인이 농장운영에 경영주를 보좌하고 다른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농업보조자로 강제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영국에서도 경영주의 부인인 여성농업인이 남성과 동일한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퇴직연금, 출산수당, 질병수당, 장애수당을 지불받는다.

셋째, 많은 여성농업인이 남편의 사회보장에서 연유되는 복지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농업부문의 임금근로자인 여성과 동등한 수준의 연금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유급출산 휴가가 제공되지 않으며 벨기에에서는 질병이나 출산, 재해로 인한 장애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각 국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에서는 농업사회보험이 적용되는데 그 주요 분야는 재해질병보험, 건강보험, 연금으로 구성된다. 재해농업보험은 전 농가가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며 재해질병보험은 여성농업인을 포함하여 농가에서 농작업에 참여하는 전원에게 적용된다. 농업건강보험은 전업적인 농업경영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이상의 농외수입이 정기적으로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경영주의 부인에게도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급여소득자에 비해 유급출산휴가가 없다.

벨기에는 농업경영주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농업경영주는 배우자를 위한 유족연금(남성경영주는 부인, 여성경영인은 남편)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경영주의 배우자는 남편에서 유래된 복지혜택만을 보유하고 자신의 자격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성농업인은 임원을 비롯한 주요한 리스크에 대한 보호, 가족수당, 남편의 퇴직연금,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이 있다. 그에 반해 질병, 출산, 재해시의 장애수당은 지급받지 않는다. 법인에서 일하는 사원인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된다. 사원이 아닌 경우에는 임금계약 종업원 혹은 공동경영 사원을 보좌하는 가족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덴마크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에 따라 남편과 부인을 차별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67세부터 지급받는 퇴직연금은 동등한 자격으로 받는다. 한편 신체 장애보험 가운데 농업경영주의 부인은 농장에서 취로한 경우에도 신체장애나 취로불가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경영주의 부인은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가수당만이 지급되는데 이것도 남편이 농장에 과세된 소득의 일부가 부인의 농업노동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세무서에 증명하여야 한다.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는 여성농업인에게는 출산전 4주간과 출생후 24주간의 기간 동안 신고소득의 90%에 상당하는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출생후 여성농업인의 남편은 2주간의 부권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성농업인에게 부여되는 24주간의 수당에서 차감한다.

실업보험제도로서는 자영업자 실업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한 여성농업보조자는 조기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60~67세에 이르는 사람이다. 이 연금수급자는 연간 최고 200시간까지 취로를 계속할 수 있다. 또한 60~67세에 이르는 남녀 농업취업인이 주당 20시간이하 노동하는 경우는 당국의 허가를 맡아 단기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프랑스에서는 여성농업경영인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가족수당, 건강보험, 장애연금, 퇴직연금이 포함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여성이 GAEC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경영주로서 남성과 동일한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된다. 여성농업인이 경영주의 부인인 경우에는 남편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과 가족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다. 그러나 장애연금은 받지 못한다.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여성농업인 개인이 연금보험료를 지불하고 정액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영주였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부인의 개인자산이 최고 한도를 넘지 않은 한 부인은 남편의 정액연금 전액과 소득비례연금의 1/2을 유족연금으로 지급받는다. 한편 배우자 사망이후 부인이 경영주가 되고 55세에 달하여도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경영주로서 승계할 수 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농업연금강제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남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은 법률상 피보험자 본인이 부양 가족의 농업보조자로 간주된다. 경영주와 결혼한 여성농업인이 ① 농장운영에 경영주를 보좌하고 ② 18세 이상이며 ③ 다른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조건을 만족하면 부양가족인 농업보조자로 강제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농업강제건강보험도 연금과 마찬가지로 남성과 동등하고 균등하게 대우를 받는다. 현금급부의 경우 공동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불의무를 가지지 않아서 부부는 2인분이 아닌 1인분의 연금보험료만을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동거하는 부부는 한 사람이 강제보험 신청에서 면제되는 것이 가능하다.

현금급부의 경우는 여성농업인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이 때 퇴직연금이나 불구폐질연금의 수급자격이 없는 여성농업인이 질병으로 취로가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면 질병수당이 본인에게 지급된다. 현금으로 지불하는 질병수당 최장 지급기간은 52주이다. 피보험자로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의 경우는 공동피보험자로 간주된다.

출산수당은 1980년 이후 전 임신부에게 출산수당 청구권이 주어졌다. 급여소득자인 여성에게는 소득에 비례한 출산수당이 주어지지만 여성농업인의 경우에는 정액수당으로 지급되며 이는 소득비례 수당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런 점에서 여성농업인은 급여소득자에 비해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여성농업인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전 국민이 세금외에 소득의 30%를 납부하고 퇴직연금, 폐질연금, 유족연금 및 가족수당 등을 받는다. 퇴직연금은 남녀 모두 65세부터 연금수급자격이 있다. 소득이 최저수준이하인 55세이상 자영업자에게는 조기퇴직 급부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행위 능력을 80%이상 상실한 자영업자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하여 65세까지 조기퇴직 급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남편을 보좌하는 부양가족인 부인에게도 남편과 동등한 수급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족연금은 규정연령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미망인에게 자녀연령과 관계 없이 부양자녀수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 연령의 자녀를 부양하는 미망인이나 40세이하의 미망인에게는 일시미망인 연금을 지급한다.

신체장애시의 장애자 급부는 노동자와 동등하게 적용한다. 장애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 ① 사업에 참가하고 혹은 사업을 위해 최소한도 6개월 일할 것 ② 법적 최저임금을 받았을 것이라는 두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이 두가지 조건 중 어느 쪽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여성농업인은 차별을 받는다.

이외에도 네덜란드에서는 배우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생존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소득에 달하지 않는 농업인에게는 보조를 제공한다.⁴⁾

영국에서는 경영주의 부인은 다음의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농장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여성으로 독자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때에는 여성은 무직으로 간주된다. 이들에게는 남편을 통해 연금혜택이 주어지는데 60세가 되면 퇴직연금이 주어지고⁵⁾ 미망인인 경우에는 여성의 연령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연금의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둘째, 경영주의 부인으로서 농장운영에 참여하는 여성과 여성 경영인으로 남성과 동일한 비율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남편 연령과 관계없이 60세가 되면 퇴직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지고 18주간의 출산수당, 최장 26주간의 질병수당, 그리고 장애수당을 지불받는다. 셋째, 남편에게서 임금을 받는 여성농업인으로 이들은 임노동자와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즉 의료와 입원치료는 무료이며 아동수당은 자녀 전부에게 지불되고 저소득세 대에 대해서는 각 종 급부금이 제공된다.

여성농업인을 포함하여 농업인은 자영업퇴직연금이 정액지급되는데 반해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한다. 그러나 임노동자는 소득비례 보험료에 따라 추가 급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비해서는 농업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

4. 대행서비스 제도

대행서비스는 가사와 농업일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주요한 사회 정책의 하나로 1986년 채택한 자영업에 참여하는 여성을 위한 EC의 훈령(Directives)에서도 각 회원국이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4) 그러나 실제로는 실질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장의 지가 때문에 농업자에게 생활비 보조는 거의 지급되지 않는다.

5) 남편인 경우에는 65세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된다.

EC의 회원국 가운데 대행서비스 제도가 없는 나라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이다. 이들은 아직까지 가족, 친지가 대행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외의 국가들은 대행서비스제도가 있다. 그러나 각 국의 상황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EC 회원국의 대행서비스 제도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행서비스를 시행하는 주체는 농민단체가 많다. 덴마크의 경우는 덴마크 농업자협회와 가족농장협회의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자이며 벨기에에는 전문 농업자단체, 프랑스는 농업조합이 주체이다. 아일랜드는 협동조합이 운영하며 독일은 농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 대행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둘째, 대행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 제도의 활성화에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대행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지만 1981년부터 정부보조금이 지불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EC회원국 가운데 정부보조금이 있는 나라는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이며 정부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 나라는 아일랜드, 영국, 룩셈부르크이다. 정부의 지원내용을 보면 덴마크는 질병, 출산, 훈련을 위해 대행작업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을 보조하며, 네덜란드는 질병, 재해, 휴가, 훈련 등으로 인해 대행서비스를 받을 경우 보조를 받는다. 그러나 여성의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지원은 없다. 프랑스의 경우는 1999년 농업법에서는 대행비용에 대한 100%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룩셈부르크는 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서클의 운영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셋째, 대행서비스의 내용 역시 각국이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농업노동과 가사에 대한 대행서비스를 받는 나라는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이며 농업대행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나라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이다. 반면 영국은 민간단체가 농업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가사대행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넷째, 대행 서비스를 받는 이유는 질병, 입원, 출산, 재해, 연수, 농업단체일, 휴가, 농번기의 과도한 노동 등이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이 있는 항목과 정도는 나라마다 차이를 보인다.

다섯째, 대행서비스와 관련되어 특히 프랑스는 여성에 대한 우대 지원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고 있다. 여성농업인은 농장에서 농작업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경영주가 아닌 여성도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을 가진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1977년부터 대행작업원이 받는 비용의 90%에 상당하는 수당이 지급된다. 수당은 1일 최고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최장 57일까지 지급된다. 여성농업인이 훈련에 참가하거나 농업단체의 직무로 대행작업을 신청한 경우는 우대요금으로 대행서비스를 받는다. 특히 1999년 개정된 농업법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임신한 경우 대행비용의 100%를 정부가 부담한다.

각 국의 대행서비스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우에는 농업사회보장제도가 농작업에 대한 부조라는 형태로 대행서비스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 농작업부조는 농장에서 일하는 농업경영자와 그 배우자에게 제공된다. 농업사회보장제도가 대행서비스를 대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자 부부가 소속된 민간서비스 단체(교회, 조합, 복지센터)에서 대행작업원을 파견한다. 여성농업인은 질병, 치료 혹은 출산시 가사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벨기에의 경우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SRA는 전문농업인이 회원인 농업자단체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농작업 대행 작업원을 유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은 긴급사태의 발생이나 단기연수시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벨기에의 대행서비스에서 특이한 것은 작업원 파견기준에 독자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농업인이 경영주인 경우인 남성경영주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며 성별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남편을 보좌하는 여성농업인의 경우에는 6,7 순위이며, 출산시의 여성농업보조자에 대한 우선 순위는 6위이며 대행부담금의 비율은 약간 낮다. 한편 질병, 재해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작업원의 파견은 통산요율이며 우선순위는 7위이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덴마크농업자협회, 덴마크가족농장협회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립단체가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덴마크에서 대행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러나 대행 비용이 비싸서 오랜 기간 큰 발전을 보지 못했지만 1981년 정부 보조금이 지불되면서 크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대행서비스 기관은 각 농장에

자격증을 가진 대행작업원을 파견하며 질병, 출산, 훈련, 혹은 휴가로 일할 수 없는 가족은 누구라도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행서비스 자금의 일부는 회원의 출자로, 일부는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질병, 출산, 훈련을 위해 대행작업을 신청하면 보조금 혹은 보상금이 남녀농업자에 지급된다. 정부의 보조금은 대행작업원과 감독관을 훈련하는 비용으로도 사용된다.

프랑스의 경우 대행서비스는 농업자조합이 행하며 대행작업은 농작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여성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장에서 농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영주가 아닌 여성도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대행작업의 요청은 여성의 법률상 지위와 관계가 없다. 특히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할 경우에는 1977년부터 대행작업원이 받는 비용의 90%에 상당하는 수당이 여성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수당은 1일당 최고한 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최장 57일까지 지급된다. 이 수당의 소요자금은 농업자조합이 출자한 것이며 농작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훈련코스에 참가하거나 농업단체의 직무상 대행작업원 파견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대요금으로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1999년 개정된 농업법에서는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에는 대행작업의 비용을 100%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젊은 여성의 농업취업을 보다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EC국가에서도 프랑스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앞서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일랜드는 협동조합이 대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번기 과잉작업, 질병, 휴가, 출산 시에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농작업만이 아니라 가사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아일랜드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대행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가세대의 이용이 많은 편이다.

룩셈부르크에서는 「노동교환과 상호부조의 서클」이 설립되고 농장에서 일하는 가족전원이 이 단체에 참가할 수 있다. 이 서클은 운영자금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대행서비스는 질병, 사망, 재해, 입원, 출산, 과도한 작업부담시에 제공되며 농업뿐만 아니라 가사대행도 가능하다.

네덜란드에서는 대행서비스를 총괄하는 전국조직이 있으며 농업단체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의 회원은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른

부과금을 지불한다. 즉 질병, 재해, 휴가, 훈련 등의 경우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행서비스를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임신과 출산휴가에 대한 보상제도는 없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젊은 여성은 농업 훈련을 받고 가사와 영농 모두를 대행하는 가격을 취득하며 정부가 이를 보조한다. 그러나 농작업 없이 가사만을 제공하는 대행서비스 지원은 가능하지 않다.

영국에서는 농작업에 대한 공적 서비스는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훈련, 임신 혹은 출산의 경우 여성농업자에게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가 있지만 그 대행료가 매우 비싸다. 가사대행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사부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로 만성질환자나 신체장애자, 고령자를 위한 것이며 비용은 소득에 비례하여 지불한다.

5. 농업관련단체와 협동조합에의 참여

EC 회원국에서도 농업단체와 협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활발히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여성농업인의 농업관련단체에의 참여는 두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는 농업관련단체에의 참여가 경영주(여성경영주 포함)에만 한정된 사례이며 룩셈부르크가 여기에 해당한다. 룩셈부르크에서는 농업단체에서의 투표권을 경영주에게만 한정하고 있다.

둘째 가족농업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에게도 참여가 허용된 경우로 독일,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등으로 대부분의 EC회원국에서 경영주 여부에 불문하고 남녀 모두에게 개방되고 있다. 한편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에서는 농업단체내에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만의 조직을 별도로 두거나 여성 자문위원을 두고 있다.

협동조합과 관련된 문제 중 과연 조합원 자격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 가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즉 조합원 자격을 경영주에게 부여할 것인가 혹은 자연인 개인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별로 서로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별로 일률적으로 평가

하기 어렵다. 다만 독일과 벨기에의 경우 일부 협동조합이 경영주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제한한다. 그러나 조합원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서도 투표권을 농장당 1표로 제한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스페인의 경우 경영주에게만 투표권을 한정하고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는 1농장당 1표의 투표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각 국의 농업단체 및 협동조합에의 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우에는 농업단체와 협동조합에 경영주가 아닌 경우도 남녀 모두에게 균등하게 개방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협동조합에의 참가자격은 자연인으로 법인이나 경영주는 아니다. 다만 협동조합 규칙은 조합원을 경영주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

벨기에의 경우에도 농업단체의 가입과 활동에 남녀 경영주간의 성별 차이는 없다. 또한 일부 농업단체는 「가족」인 여성농업보조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단체도 있다. 협동조합의 경우 대부분의 협동조합 규칙에는 실제상 경영주를 조합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는 제한을 받고 있다. 다만 여성농업보조인은 대리참석 규정에 따라 남편의 대리로 출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덴마크에서는 농업단체에의 참여는 경영주여부에 관계없이 차별이 없다. 회원인 여성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고 피선거권이 있으나 농업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는 않다. 덴마크에서는 많은 농업단체에 농촌여성협회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가정경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협동조합에서는 가족농장 단위로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부부의 재산분리를 인정하는 법제도하에서 결혼한 부부의 경우 농장을 소유한 배우자가 협동조합에서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나 재산공유를 정한 법제도 하에서 결혼한 농장소유자 부부는 경영주와 그 부인 모두 협동조합의 임원에 선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농장단위로는 1표의 투표권만이 부여된다.

스페인에서는 경영주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상 농민단체에서의 남녀차별은 없다. 그러나 스페인에서도 이사회 등 책임있는 지위에서 일하는 여성은 극히 적다. 그리고 협동조합에서는 경영주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경영주여부에 불문하고 농업단체나 농업조합에 대한 참여는

남녀가 모두 동등하다. 협동조합, 농업신용기금에서는 각 농장에 1인 1표, 부부 어느 쪽도 투표가 가능하다. 또한 부부 모두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또한 부부 누가 출석할지는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반면 농업회의소와 농업건강보험 기금에서는 농장에서 일하는 부부 모두에게 투표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아일랜드의 경우는 농업단체나 협동조합에 공적으로는 남녀가 차이가 없다. 아일랜드 농업자협회(IFA)에서는 16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의 활약으로 여성의 농업단체에서의 역할이 향상되었다. 아일랜드 협동조합협회는 1980년 경영자개인이 아닌 가족원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을 채택하였다.

룩셈부르크에서도 경영주가 농업단체나 협동조합의 멤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영주는 가족 1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투표권 행사토록 할 수 있다. 농장에서 일하는 가족원은 회의 출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네덜란드에서는 여성이 경영주, 공동경영주, 농업보조자, 임노동자라는 지위에 관계없이 농업단체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초 행정단위, 지역, 그리고 전국단위의 농업조합 등 거의 모든 의사결정기관에 농촌여성단체를 대표하는 자문위원(adviser)이 있다. 협동조합에서는 경영주여부에 관계없이 여성을 정식조합원으로 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재에는 부부, 농장에서 일하는 전 자녀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각 가족의 투표권은 1표로 한정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남녀모두 농업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조합의 가입 주체는 농장으로 조합비가 농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여성경영주도 농업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경영주의 부인과 친척도 회비를 추가 부담하면 농업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조합원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 한편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자연인에게 부여되며 경영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일 농장에서 복수의 사람이 협동조합의 회원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농장은 회원수 만큼 투표권을 가진다.

6. 결론

EC 회원국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에도 스스로 3가지 지위 중 하나를 선택한 여성은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도 가족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공동 경영주 혹은 준경영주로 간주하여 각 종 권한을 부여하는 점, 그리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정책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각 각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또한 EC 차원에서도 경영주와 가족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을 그 자체로서 사회적 신분을 인정하고 독자적인 사회보장정책의 피보험자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EC 회원국의 대부분이 대행서비스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여성 농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노동력에 의존하는 농업의 특성상 가족원의 유사시나 임신, 출산과 같은 생활주기에서 나타나는 가족노동력을 보완하는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농업단체와 협동조합에의 여성 참여 역시 대부분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협동조합에서의 투표권은 개인별로 주어지기 보다는 가족농장 단위로 주어져서 1가구 당 1표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농업단체나 협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EC 회원국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타 산업부문의 남녀평등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여성이 농업을 기피하고 이로 인해 가족농이 붕괴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진전된 것이다. 그리고 가족농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의 특성상 경영주와 결혼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평가와 사회보장이 없으면 농업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